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97호
- 발의자 : 황철규 의원
-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II . 제안이유

-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하는 근거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1항).
2. 피해경험 학부모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의무 규정(안 제24조제2항 단서).

IV .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10. 28. ~ 11. 1. (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황철규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197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구제를 강화하고 심의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¹⁾에 따라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²⁾, 법 시행령 제 14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³⁾.

또한 법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시 전체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2)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지원청에는 제1기(2020~2021학년도), 제2기(2022~2023학년도)를 거쳐 현재는 제3기(2024~2025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 위원 구성은 법 제13조의 학부모위원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표-1]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이력 현황⁵⁾

교육지원청	교육 지원청 직원	구청 직원	교원, 퇴임 교원	전 교원 전문직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의사	전문가	청소년 활동가	기타	합계 (명)
동부	2	0	0	5	14	8	5	0	0	0	8	42
서부	1	0	7	7	16	7	7	0	0	0	2	47
남부	1	1	5	5	15	5	10	0	0	0	0	42
북부	1	1	9	3	18	7	7	0	1	0	1	48
중부	2	0	6	2	20	10	6	0	0	0	0	46
강동송파	2	0	7	7	16	5	7	1	0	1	1	47
강서양천	1	0	12	2	21	3	7	0	0	4	0	50
강남서초	1	0	12	2	21	6	7	0	0	0	0	49
동작관악	1	1	7	7	17	6	7	0	0	1	0	47
성동광진	2	0	10	4	21	5	6	0	2	0	0	50
성북강북	2	0	10	2	19	7	7	0	0	0	2	49
합계(명)	16	3	85	46	198	69	76	1	3	6	14	517
비율(%)	3.0	0.6	17.9	6.7	40.2	14.0	13.6	0.2	0.8	0.8	2.4	100

○ 이와 관련 제3기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시 교육지원청에서 공고한 자격기준 및 선정방침을 살펴보면, 관내 재학생의 학부모,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 학교폭력 관련 기구 활동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현행 기준은 전문가·경력자 중심의 구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과 실질적 구제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161번)

[표-2]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중 학부모위원 자격기준 및 선정방침⁶⁾

접수방법	자격 기준 및 대상	선정방침
학교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 제출한 자에 한해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학교급(초·중등) 및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 및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력자(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등)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 관점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24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상 규정하며(안 제1항),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안 제2항), 그 외의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항).
- 우선 안 제24조제1항은 법 제12조⁷⁾에서 규정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상 재규정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

6) 각 교육지원청별 2024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 중 학부모위원의 자격요건의 공통사항을 발췌한 것으로, 학부모위원의 자격기준은 교육지원청 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되므로 대부분 유사함.

7)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으로 보입니다.

- 한편 안 제24조제2항은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피해학생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피해학생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의규정인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선발할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경우 2025년 12월 교육지원청별 계획 수립 후 1월 이후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⁸⁾, 이번 개정사항이 반영될 경우 금번 학부모위원 신규 모집시 피해경험이 있는 학부모를 선발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 10. 30.).⁹⁾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박소현(2180-8265)
----------	----------------	-------	----------------

8)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 계획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161번) 참고
- 2025년 10~11월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모집 계획 수립을 위한 학교생활교육과 생활교육지원팀장 회의 개최 예정
- 2025년 12월 모집 계획(안) 수립
- 2026년 1월 모집 공고 및 위촉, 2월 연수 계획
- 2026년 3월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시작

9)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 10. 30.)